

의안번호	2212676
의 퇴 인	윤영석 의원
회 답 일	2025.10.17.
추 계 번 호	25E4801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농·축산·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,
농어민 직수입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3년 연장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농·축산·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의 적용 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8년 말로 3년 연장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2026년 2조 4,169억원, 2028년 2조 6,203억원 등 2026~2028년 3년간 총 7조 5,537억원(연평균 2조 5,179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- 농·축산·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 시 부가가치세 및 지방소비세는 2026~2028년 총 7조 5,454억원(연평균 2조 5,151억원) 감소 예상
 - 농어민 직수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 시 부가가치세 및 지방소비세는 2026~2028년 총 84억원(연평균 28억원) 감소 예상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부가가치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누적	연평균
농·축산·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3년 연장(안 제105조 제1항제5호 및 제6호)	-24,141	-25,137	-26,175	-75,454	-25,151
농어민 직수입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3년 연장(안 제106조제2항제9호)	-28	-28	-28	-84	-28
합계	-24,169	-25,165	-26,203	-75,537	-25,179

주: 각 항목별 세수효과의 연평균은 세수효과가 발생하는 연도의 평균이며, 이들 연평균을 합산한 금액은 합계의 연평균과 일치하지 않음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5조(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) 제1항제5호 및 제6호	○ 농·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기한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8.12.31.	-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2	안 제106조 (부가가치세의 면제 등) 제2항제9호	-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·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와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 연장 - 적용기한: (현행) 2025.12.31. → (개정안) 2028.12.31.	-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105조(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) 제1항제5호 및 제6호	○	-
2	안 제106조(부가가치세의 면제 등) 제2항제9호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가. 농·축산·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

-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세수효과가 2026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
- 전체 조세지출액에서 농·축산·임업용 기자재 실적 및 어업용 기자재 실적을 구분하고, 각각의 최근(2019~2023년) 추세를 반영해 향후 조세지출액을 추정
 - 영세율에 따른 조세지출액(징수 기준)은 농·축산·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분이 모두 포함된 자료로, 세부 항목을 각각 구분할 수 없음
 - 영세율 대상으로 신고된 공급가액 자료(신고 기준)는 최종 조세지출액을 나타내는 자료는 아니나, 농·축산·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 분을 구분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해 조세지출액에 반영함

나. 농어민 직수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

-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세수효과가 2026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
- 최근 조세지출액의 추세를 반영하여 추계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농·축산·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

- 동 제도는 비료, 농약, 사료, 기계 등 농·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내용
 - 적용대상은 비료¹⁾, 농약²⁾, 경운기·트랙터·콤바인 등 농업기계, 양돈케이지·사료저장탱크 등 축산기계, 약제주입기 등 임업용 기자재, 어망·선박용 기관 등 어업용 기자재, 목초액 등 유기농어업자재 허용물질³⁾ 등임
- 최근 농·축산·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따른 전체 조세지출액은 2018년 1조 7,475억원, 2024년 2조 2,266억원 등으로 집계
 - 농·축산·임업용 기자재로부터 발생한 금액과 어업용 기자재로부터 발생한 금액이 모두 포함된 자료임

[표 2] 농·축산·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지출액: 2018~2024년
(단위: 억원)

	2018	2019	2020	2021	2022	2023	2024
조세지출액	17,475	18,770	17,763	18,481	21,886	23,047	22,266

주: 농·축산·임업용 기자재 영세율과 어업용 기자재 영세율에 따른 조세지출액이 모두 포함된 금액임
자료: 정부, 연도별 「조세지출예산서」

- 영세율 대상으로 신고된 전체 기자재 공급가액을 기준으로, 최근 농·축

1) 「비료관리법」에 따른 비료

2) 「농약관리법」에 따르거나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된 농약

3) 「농·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제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」 별표에 따른 농업기계, 축산기계, 어업용기자재, 유기농어업자재 허용물질임

산·임업용 기자재 분의 비율은 2024년의 경우 96.2%, 어업용 기자재 분의 비율은 3.8% 수준으로 집계

[표 3] 영세율 대상으로 신고된 기자재 공급가액 항목별 비율: 2018~2024년
(단위: %)

	2018	2019	2020	2021	2022	2023	2024
농·축산·임업용(제105조제1항제5호)	95.8	95.8	96.0	95.8	96.4	96.7	96.2
어업용(제105조제1항제6호)	4.2	4.2	4.0	4.2	3.6	3.3	3.8

주: 공급가액은 신고(귀속) 기준 금액이며, 최종적인 영세율 적용 대상 금액과는 차이가 있음
자료: 국세청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영세율 대상인 기자재 공급가액 자료를 반영하여, 전체 조세지출액을 농·축산·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조세지출과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조세지출로 구분함
 - 매년 전체 조세지출액(농·축산·임업용 및 어업용)에 농·축산·임업용 기자재 공급가액 비율 및 어업용 기자재 공급가액 비율을 곱하여 추정

[표 4] 최근 농·축산·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지출액(추정치):
2018~2024년
(단위: 억원)

	2018	2019	2020	2021	2022	2023	2024
농·축산·임업용 기자재	16,738	17,976	17,048	17,697	21,092	22,275	21,416
어업용 기자재	737	794	715	784	794	772	850

- 최근 추세를 반영하여, 농·축산·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시 조세지출액을 2028년 2조 9,122억원 등으로 추정
 - 농·축산·임업용 기자재 조세지출액은 2018년 1조 6,738억원에서 2024년 2조 1,416억원으로 2018~2024년 7년간 연평균 4.2% 증가한 것으로 추정

[표 5] 최근 농·축산·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지출액(추정치): 2018~2024년
(단위: 억원, %)

	2018	2019	2020	2021	2022	2023	2024	연평균 증감률
농·축산·임업용 기자재 조세지출액	16,738	17,976	17,048	17,697	21,092	22,275	21,416	4.2

- 향후 추계기간 조세지출 규모는 최근 조세지출액의 증감률 추세(연평균 4.2%)와 동일한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

[표 6] 향후 농·축산·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지출액 추정: 2025~2028년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
농·축산·임업용 기자재 영세율 연장 시 조세지출액	22,314	23,250	24,225	25,241

- 최근 추세를 반영하여,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시 조세지출액을 2028년 934억원 등으로 추정
 - 어업용 기자재 조세지출액은 2018년 737억원에서 2024년 850억원으로 2018~2024년 7년간 연평균 2.4% 증가한 것으로 추정

[표 7] 최근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지출액(추정치): 2018~2024년
(단위: 억원, %)

	2018	2019	2020	2021	2022	2023	2024	연평균 증감률
어업용 기자재 조세지출액	737	794	715	784	794	772	850	2.4

- 향후 추계기간 조세지출 규모는 최근 조세지출액의 증감률 추세(연평균 2.4%)와 동일한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

[표 8] 향후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지출액 추정: 2025~2028년
(단위: 억원)

	2025	2026	2027	2028
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연장 시 조세지출액	870	891	913	934

- 농·축산·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할 경우 부가가치세수는 2026년 2조 4,141억원, 2028년 2조 6,175억원 등 2026~2028년 3년간 총 7조 5,454억원(연평균 2조 5,151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- 2026~2028년 국세인 부가가치세(74.7%)는 총 5조 6,364억원, 지방소비세(25.3%)는 총 1조 9,090억원 감소 예상

[표 9] 농·축산·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:
2026~2028년

	2026	2027	2028	누적	연평균
농·축산·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(안 제10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)	-24,141	-25,137	-26,175	-75,454	-25,151
- 국세(74.7%)	-18,033	-18,778	-19,553	-56,364	-18,788
- 지방소비세(25.3%)	-6,108	-6,360	-6,622	-19,090	-6,363

나. 농어민 직수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

- 동 제도는 농민 등이 직접 수입하는 비료, 농약, 사료, 기계 등 농·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하는 내용
- 동 제도에 따른 최근 조세지출액은 2021년 36억원, 2022년 46억원, 2025년(전망) 19억원 등으로 증감을 반복하는 추세로, 최근(2020~2025년)의 연평균 조세지출액은 28억원 수준

[표 10] 농어민 직수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조세지출 실적:
2020~2025년(전망)

(단위: 억원)

	2020	2021	2022	2023	2024	2025(전망)	연평균
조세지출액	21	34	46	24	23	19	28

자료: 정부, 연도별 「조세지출예산서」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농민 등이 직접 수입하는 농·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의 적용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할 경우 부가가치세수는 2026년 28억원 등 2026~2028년 3년 간 총 84억원(연평균 28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- 향후 추계기간 동안 최근(2020~2025년)의 연평균 조세지출액(28억원)과 동일한 수준으로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가정
 - 2026~2028년 3년 간 국세인 부가가치세(74.7%)는 총 62억원, 지방소비세(25.3%)는 총 21억원 감소 예상

[표 11] 농어민 직수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: 2026~2028년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누적	연평균
농어민 직수입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기한 연장(안 제106조제2항제9호)	-28	-28	-28	-84	-28
- 국세(74.7%)	-21	-21	-21	-62	-21
- 지방소비세(25.3%)	-7	-7	-7	-21	-7

IV. 부대의견

-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김효경	박연서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효경	02-6788-4647	hkkim@assembly.go.kr